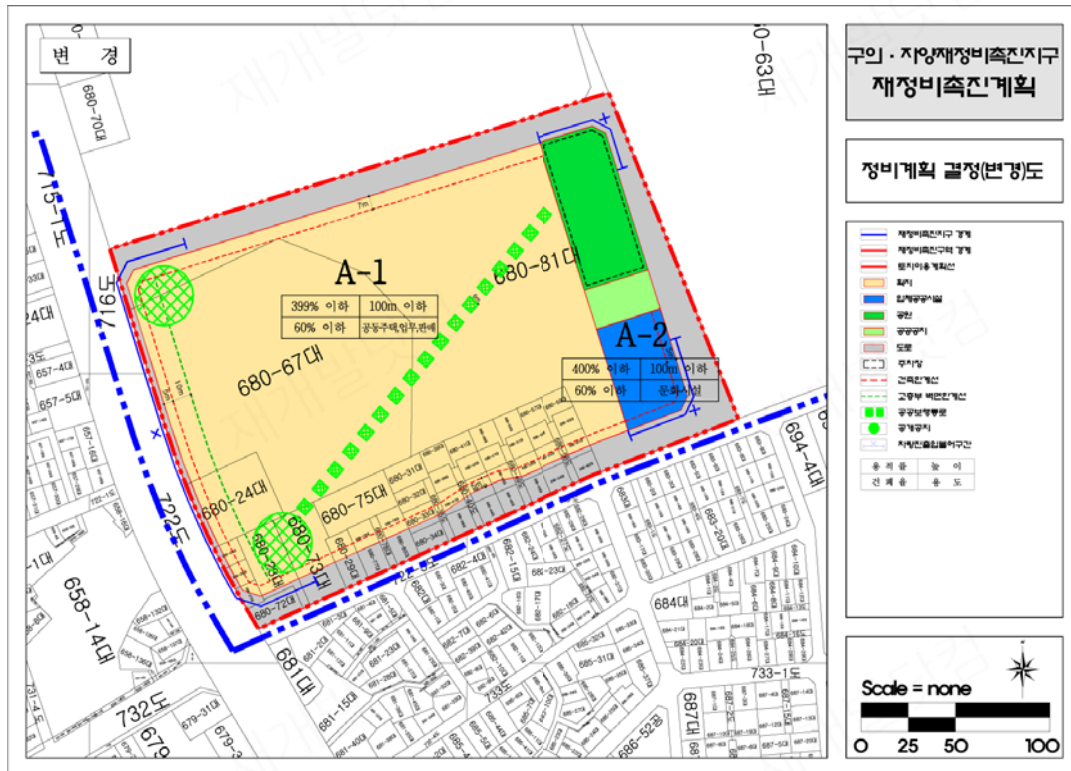


■ 정비계획 결정도

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호

도시관리계획(승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시 제5호(1987.2.17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44호(2004.12.30.)로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242-1 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송인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1월 18일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**송신초교 이전 및 각종학교 설치에 따른 학교 시설의 종류 변경과 교내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연결통로 및 계단실 신설을 위한 건축범위(건폐율) 변경을 위해 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결정(변경)코자 함**

II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송인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 송인동 200-16 일대	218,280	-	218,280	2004.12.30. (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44호)	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) 교통시설(변경없음)

2) 공간시설(변경없음)

3) 교육시설

(1) 학교

■ 학교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	위치	면 적(㎡)			결정일	비 고
		기 정	변 경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학 교	초등학교	각종학교	송인동 242-1일대	13,517	-	13,517	1987.2.17. (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 시 제5호)	

■ 건축범위 결정(변경) 조서

건폐율(%)		용적률(%)		높이(층)		비 고
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
30 이하	35 이하	120 이하	120 이하	5 이하	5 이하	일반상업지역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

III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(☎02-2133-8411) 및 종로구 건축과(☎02-2148-2812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도시관리계획(승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

